

[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1. 이용계약절차

- 1)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.
- 2).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 -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확인서로 장기요양대상자여부를 확인한다. 대상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.
 - ② 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(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).
 - ③ 기관은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대상자에게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
 - ④ 계약이 체결, 변경된 경우 급여제공기관은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2. 계약기간

대여품목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,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3. 계약목적

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와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을 하기 위함이다.

4. 기관의 의무

- 1)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시설입소 시 회수하고 구분하여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2)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알면서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.
- 3)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,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- 1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 - ①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
- 2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질병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 -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 - ③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변경하거나, 입원, 입소 또는 사망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
 -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 - ⑤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.집기 등의 훼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제6조 [급여방식 및 급여품목]

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) 구입방식 : 수급자가 『구입품목』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.
 - 2) 대여방식 : 수급자가 『대여품목』 을 일정 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.
2. 급여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) 구입품목(10종)
 - 가. 이동변기
 - 나. 목욕의자
 - 다. 성인용보행기
 - 라. 안전손잡이
 - 마. 미끄럼방지용품 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
 - 바. 간이변기(간이대변기, 소변기)
 - 사. 지팡이
 - 아. 욕창예방 방석
 - 자. 자세변환용구
 - 차. 요실금팬티
 - 2) 대여품목(6종)
 - 가. 수동휠체어
 - 나. 전동침대
 - 다. 수동침대
 - 라. 이동욕조
 - 마. 목욕리프트
 - 바. 배회 감지기
 - 3) 구입 및 대여품목(2종)

- 가. 욕창예방매트리스
- 나. 경사로(실내용, 실외용)

4. 연간 한도액

- 1)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.
- 2) 연 한도액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.
- 3)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한다.

5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1) 기관의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- 2) 장기요양등급외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3)급여비용 본인부담률

일반 대상자	감경		타법령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
	보험료 순위 25% 이하	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 이하		
15%	6%	9%	6%	면제

제7조 [복지용구 급여기준]

1.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 - 1)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,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.
 - 2)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시점을 기준으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내구연한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.
 - 3) 제2호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.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
 - 4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.
 - 5) 수급자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구입,대여할 수 있다.
 - 가.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,형태,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. 단, 성인용

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.

나.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의 제품만 대여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.

다. 제6조제2항3호의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. 다만, 경사로(실내용)는 구입, 경사로(실외용)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(실내용, 실외용)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.

라.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10개, 미끄럼방지양말은 6개, 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은 5개, 간이변기(간이소변기, 간이대변기)는 2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.

6) 구입 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,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할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.

7)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(입·퇴원일 미포함)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.

2.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.

3. 기관은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 [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]

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

1.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.
2.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,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.
3.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,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.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.
4.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, 설치·철거비,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,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5.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.
6. 수급자가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.

제9조 [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]

1. 이용변경 절차

- 1) 이용계약의 변경은 전화나 서면 통보 또는 방문 등으로 요청한다.
- 2) 접수를 받은 기관은 이용자를 방문하여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급여계획서를 변경한다.

2. 구비서류

급여이용변경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.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-장기요양인정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
- 2)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(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)

3. 변경사유

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급여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3)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4)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급여이용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
- 5) 변경의 방법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- 6) 변경을 결정한 즉시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 [계약의 해제]

1. 계약해지 요건

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)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)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) 판매 또는 대여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
- 4) 기타 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)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2)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3)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4)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할 때

3. 계약의 해지

- 1)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기관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- 2)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제11조 [제품안내에 관한 사항]

1. 취급제품의 홍보

- 1)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.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보한다